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장애인은 비장애인과
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, 장애
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
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
식이 필수적입니다.

- 이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
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
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
하였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7조제3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